

서울시 어울림플라자 생활공해 감면 안내

1. **근 거:** '어울림플라자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1항'에 따라 '시장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'
 2. **감면율:** 이용료 30% 감면(생활공해 민원)
 3. **범 위:** 서울시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.
다만, 시설 및 프로그램의 신청과 추첨 절차에 따라야 함
 4. **지 역:** 조례의 '시장이 정하는 감면 대상 지역'을 어울림플라자 기준 반경 100m를 포함하는 도로 기준으로 하며, 백석초등학교는 학생과 학부모
 5. **확 인:** 확인서류 신분증(국가기관 발행)과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(3개월 이내 발급분)과 백석초등학교는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.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은 6개월임
- ※ **대상지역 상세주소:** 등촌동 644-x, 645-x, 650-x, 651-x, 714(등촌코오롱하늘채), 716(등촌보람더하임6차)번지, (강서)백석초등학교

